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076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

발 의 자 : 구자근・김위상・강승규
김도읍・최수진・김성원
강명구・정동만・강대식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・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,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・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'사무공간 제공 등'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・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

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0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”으로, “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”을 “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하게 하거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건강 보호의 지원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지원
2.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 지원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

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·도지사가 부담한다.	제14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----------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하게 하거나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----------.
<신 설>	제14조의2(건강 보호의 지원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	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건강검진 지원 2.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후 심리적 외상 검사 및 치료 지원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